|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 등급별관할기준 및 전담처리 문제 명확화에 관한 통지**법[2017]359호각 성•자치구•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4급 법원의 섭외(涉外)민상사사건 심판 직능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재판 기준을 통일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개방형 경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의 등급별관할기준 및 전담처리 문제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통보한다.1.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의 등급별관할기준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장쑤(江蘇)•저장(浙江)•광둥(廣東)의 고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억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고;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및 성도(省都)도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경제특구소재지의 시(市)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1,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텐진(天津)•허베이(河北)•산시(山西)•내몽고(內蒙古)•랴오닝(遼寧)•안후이(安徽)•푸젠(福建)•산둥(山東)•허난(河南)•후베이(湖北)•후난(湖南)•광시(廣西)•하이난(海南)•쓰촨(四川)•충칭(重慶)의 고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8,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고;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및 성도(省都)도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경제특구소재지의 시(市)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1,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5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장시(江西)•윈난(雲南)•산시(陝西)•신장(新疆)의 고급인민법원과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분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4,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고; 성도(省都)도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5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구이저우(貴州)•시짱(西藏)•간쑤(甘肅)•칭하이(靑海)•닝샤(寧夏)의 고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고; 성도(省都)도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1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각 급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해당 관할구역의 등급별관할기준은 2011년 1월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이상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의 관할등급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2.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섭외(涉外)심판부 또는 전문합의부가 심리한다.(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외국조직이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상거소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민상사사건;(2) 민사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하는 벌률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민상사사건;(3)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출자, 주주자격 확인, 이익배당, 합병, 분할, 해산 등 해당 기업과 관련된 민상사사건;(4)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인 민상사사건;(5) 지급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포함한 신용장•보증장 분쟁사건;(6) 위의 (1)~(5)호에 열거된 사건의 관할권 이의 재정(栽定)에 대한 상소 사건;(7) 위의 (1)~(5)호에 열거된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 사건(단, 당사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8) 다국적 파산 협조 사건;(9) 민상사 사법협조 사건;(10) 최고인민법원의 <중재 사법심사 사건 전담처리 문제에 관한 통지>에 의해 확정된 중재 사법심사 사건.혼인•가사분쟁, 상속분쟁, 노동분쟁, 인사분쟁, 환경오염 권리침해 분쟁 및 환경오염 공익소송은 전 항에 규정한 민상사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 해사(海事)•해상(海商)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은 이 통지를 적용받지 아니한다.4.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과 연관된 민상사사건은 이 통지를 참조하여 적용한다.5. 이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접수된 사건은 이 통지를 적용받지 아니한다.이 통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봉착한 경우 지체없이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기 바란다.최고인민법원2017년 12월 7일 |  | **最高人民法院关于明确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级别管辖标准以及归口办理有关问题的通知**法〔2017〕359号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为合理定位四级法院涉外民商事审判职能，统一裁判尺度，维护当事人的合法权益，保障开放型经济的发展，现就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级别管辖标准以及归口办理的有关问题，通知如下：一、关于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的级别管辖标准北京、上海、江苏、浙江、广东高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2亿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直辖市中级人民法院以及省会城市、计划单列市、经济特区所在地的市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20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其他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10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天津、河北、山西、内蒙古、辽宁、安徽、福建、山东、河南、湖北、湖南、广西、海南、四川、重庆高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80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直辖市中级人民法院以及省会城市、计划单列市、经济特区所在地的市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10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其他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5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吉林、黑龙江、江西、云南、陕西、新疆高级人民法院和新疆生产建设兵团分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40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省会城市、计划单列市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5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其他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2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贵州、西藏、甘肃、青海、宁夏高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20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省会城市、计划单列市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2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其他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人民币100万元以上的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各高级人民法院发布的本辖区级别管辖标准，除于2011年1月后经我院批复同意的外，不再作为确定第一审涉外民商事案件级别管辖的依据。二、下列案件由涉外审判庭或专门合议庭审理：(一)当事人一方或者双方是外国人、无国籍人、外国企业或者组织，或者当事人一方或者双方的经常居所地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的民商事案件；(二)产生、变更或者消灭民事关系的法律事实发生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或者标的物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的民商事案件；(三)外商投资企业设立、出资、确认股东资格、分配利润、合并、分立、解散等与该企业有关的民商事案件；(四)一方当事人为外商独资企业的民商事案件；(五)信用证、保函纠纷案件，包括申请止付保全案件；(六)对第一项至第五项案件的管辖权异议裁定提起上诉的案件；(七)对第一项至第五项案件的生效裁判申请再审的案件，但当事人依法向原审人民法院申请再审的除外；(八)跨境破产协助案件；(九)民商事司法协助案件；(十)最高人民法院《关于仲裁司法审查案件归口办理有关问题的通知》确定的仲裁司法审查案件。前款规定的民商事案件不包括婚姻家庭纠纷、继承纠纷、劳动争议、人事争议、环境污染侵权纠纷及环境公益诉讼。三、海事海商及知识产权纠纷案件，不适用本通知。四、涉及香港、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民商事案件参照适用本通知。五、本通知自2018年1月1日起执行。之前已经受理的案件不适用本通知。本通知执行过程中遇到的问题，请及时报告我院。最高人民法院2017年12月7日　　　 　　 |